



제420회국회(임시회)
제2차환경노동위원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1회용품 무상제공 전면 금지〉

■ 김소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845호)

2025. 1.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1회용품 무상제공 전면 금지	3

I. 제안경위

2024년 10월 23일 김소희의원이 제출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10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플라스틱은 분해되는데 오랜 기간이 걸려 무분별하게 배출되는 1회용 플라스틱으로 인해 토양, 하천, 바다 등에 심각한 환경 문제를 일으키고, 생태계 전반에 피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음. 또한, 화석연료를 주 원료로 사용하는 플라스틱은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기후변화를 악화시키고 있음. 이에 세계 각국은 1회용 플라스틱의 사용을 금지하고,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국제협약 체결을 위해 국제사회가 함께 노력하고 있음.

현행법은 식품접객업 또는 대규모점포 등의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등에 한해서 1회용품의 사용 또는 무상제공을 허용하고 있음.

이에 대해 1회용품의 사용금지가 어려운 경우에도 무상제공을 금지하고 유상판매를 통해 소비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여 1회용품의 사용 감량을 유도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예외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무상제공을 금지하고 유상으로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Ⅲ. 검토의견

1. 1회용품 무상제공 전면 금지

개정안은 현행 1회용품 무상제공이 가능한 예외사유의 경우에도 유상으로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① (생략)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u>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u>	② ----- ----- ----- <u>유상</u> <u>으로 제공할</u>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10조제1항은 식품 제조업, 목욕장업, 대규모점포 및 체육 시설 등 특정 시설·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규정(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무상 제공 가능)하고 있으며¹⁾,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2.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식품 제조업·가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구체적인 사용 제한 규제 현황은 다음과 같음.

[일회용품 사용제한 규제 현황]

업 종	준수 사항	적용대상 1회용품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사용억제(금지)	• 1회용 컵(합성수지·금속박 등) • 접시·용기(종이, 합성수지·금속박 등) •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 1회용 수저·포크·ナイ프 • 1회용 비닐식탁보 • 1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1회용 광고선전물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음식점 및 주점업만 해당 제과점업은 사용 억제)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사용억제(금지)	• 1회용 합성수지용기 (밀봉포장용기, 생분해성수지용기 제외)
목욕장업, 숙박업(50실 이상)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면도기·칫솔·치약·샴푸·린스
대규모점포	사용억제(금지)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종이재질은 제외) • 1회용 우산 비닐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1회용 광고선전물
체육시설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무상제공금지	• 1회용 응원용품 (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은 사용억제)
도·소매업 (매장면적 33㎡ 초과 업소)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봉투·쇼핑백(종합소매업은 사용억제)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1회용 광고선전물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1회용 광고선전물

자료 : 환경부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6. 그 밖에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할 필요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업종

다만, 현행법 제10조제2항은 ①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판매·배달하는 경우, ②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③ 상례에 참석한 조문객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무상 제공을 허용하고 있음.²⁾

개정안은 예외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무상제공을 금지하고, 유상으로만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소비자에게 일회용품 사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여 일회용품 사용 유인을 줄이고 자원 낭비·환경 오염 방지에 기여하려는 긍정적인 취지로 보임.

참고로, 환경부에서 2024년 1월에 발표한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식조사³⁾ 결과, 응답자 중 일반국민(전국 1,501명)의 96.8%가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해야 할 일 1순위로 ‘플라스틱 사용 규제 강화’가 45.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바,

1회용품 무상 제공 금지를 통해 1회용품 사용을 축소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1회용품 무상 제공이 금지될 경우 소비자에게 1회용품 비용이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판매·배달하는 경우
2.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3. 상례에 참석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환경부, 「2023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요약보고서」 (2024.1.)

전가됨에 따라 제품가격 인상과 소비자 물가인상, 그리고 사업자의 매출 감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⁴⁾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또한 1회용품 유상 제공 시 물가인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1회용품 사용 억제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바,

개정안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일회용품의 전면적인 무상제공 금지 이전에 이해관계자 간 소통을 통해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 마련이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546

4) 제주특별자치도, 서울시 강서구청, 외식업중앙회 의견 제출